

# 자산관리위탁변경계약서

주식회사 엘비더함제 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갑”)와 엘비자산운용 주식회사(이하 “을”)은 2024년 01월 05일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2024년 01월 29일 체결한 자산관리위탁변경계약(이하 자산관리위탁계약과 포괄하여 “원계약서”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(이하 “본 변경계약”)을 체결하고자 한다.

- 다 음 -

## 1. 변경계약의 내용

변경 전	변경 후
<p><u>별지 1. 수수료</u></p> <p>본 계약에 따라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(부가가치세 별도이며, 이하 동일함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·2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별지 1. 수수료</u></p> <p>① 본 계약에 따라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(부가가치세 별도이며, 이하 동일함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·2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, “갑”은 “을”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중단한다.</u></p> <p>1. <u>“갑”과 “을”이 체결하는 임대리츠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(이하 “표준사업약정서”) 제28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“을”이 임대 및 매각부진에 대한 대책(시장상황, 이행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매촉진대책 수립 등)을 6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</u></p> <p>2. <u>“갑”의 모리츠인 주식회사 민간임대허브제[*]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모리츠”)로부터 “을”에 대한 수수료 지급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수수료는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“모리츠”가 수수료의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표준사업약정서 제28조 제2항,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괄지급한다.</u></p>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<u>별지 2. 계약의 해지</u></b></p> <p>1. 계약해지 사유</p> <p>① 일방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종료해지 할 수 있다. 가·나·다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 2:3 (생략)</p>	<p><b><u>별지 2. 계약의 해지</u></b></p> <p>1. 계약해지 사유</p> <p>① 일방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종료해지 할 수 있다. 가·나·다 (현행과 같음) <u>라. 표준사업약정서 제 28 조 제 2 항, 제 35 조 제 2 항에 따른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요구가 있을 경우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2:3 (현행과 같음)</p>

2. “본 변경계약”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원계약서” 에 따른다.

3. “본 변경계약” 은 2024년 04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4. “본 변경계약” 이 정당히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하고 “갑” 과 “을” 이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.

2024 년 04 월 23 일



“갑”

주식회사 엘비더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, 20층(태평로1가, 서울파이낸스센터)  
대표이사 이 윤 형 (인)



“을”

엘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, 20층(태평로1가, 서울파이낸스센터)

